

주방기기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돌발성 난청

성별	남	나이	58세	직종	절단작업자	직업관련성	낮음
----	---	----	-----	----	-------	-------	----

1 개 요

윤○○(58세, 남)은 1999년 11월 주방기기 제조업체에 입사하여 절단 및 절곡작업 을 수행하였다. 2001년 9월 6일 연장근무를 위해 저녁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 움 및 구토가 발생하였고, 우측 귀에 청력장애가 동반되어 C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 서 돌발성난청으로 진단 받았다.

2 작업환경

유○○은 입사 이후 샤링기와 벤딩기를 이용하여 스테인레스판을 절단 및 절곡작 업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. 일작업시간은 통상 8시간이었으나 일주일에 4일정도 3~4 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다. 2001년도 실시한 상기부서 작업환경측정에서 누적소 음계로 8시간 가중평균소음이 82.4dB(A)였다. 직업병연구센터 조사에서는 프레스 작 업시 최대 소음측정치가 101.0dB(A) 였고, 주변에서 하는 작업인 망치 및 그라인딩 작업에서는 99.2dB(A) 정도 였다.

3 의학적 소견

근로자의 고막소견은 정상이었고, 순음청력검사에서는 우측 귀는 농이었으나 좌측 귀는 저음역대는 정상이고, 고음역대 경도 난청(4K 기도-골도 40dBHL)이 있었다. 뇌 간유발반응청력검사에서 V파의 역치는 우측 105dBnHL을 보여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하였다. 그런데 근로자의 과거 청력검사 자료는 건강진단기관의 폐쇄로 인하여확인할 수 없었다. 2001년 9월부터 이충만감 및 이명증상은 호전되었으나 청력장애는 계속되었다.

4 고 찰

문헌 고찰에서 소음에 의해 발생되는 돌발성난청의 소음수준은 120dBA 정도이며, 등골근반사검사에서는 자극강도를 105dBHL 로 제한 할 것을 주장한다. 근로자의 작업은 최대 노출 소음강도는 101.0dB(A) 정도이다. 또한 절단 및 절곡작업은 고도의 정밀작업이 아니며, 1년 10개월 동안의 작업으로 숙력된 상태이므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 하였다.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면 평고 근로자는 청력장애가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다.

4 결 론

윤○○의 돌발성난청은

- ① 작업에서 노출된 100dBA 정도의 소음은 질병 발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며
- ② 작업의 특성상 고도의 정밀작업은 아니며 숙련된 상태였고
- ③ 발병 전 업무량이나 업무내용의 변화가 없었고, 발병 전 과도한 업무량은 없었으므로

근로자의 돌발성 난청은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.